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27

발의연월일: 2021. 2. 25.

발 의 자:정동만·권영세·백종헌

강민국・조경태・박성민

박대수ㆍ이 용ㆍ배준영

이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의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골재품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골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재품질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골재품질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을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요구하거나"를 "요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출받은 결과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21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2
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	필요한 경우
<u>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u>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	
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	
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결과를
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4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	
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u>요구하거나</u>,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⑤ • ⑥ (생 략)